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3.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여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급 대상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체 유지기간 축소(안 제8조)
- 지급 방법 변경(안 제9조)
- 지급 제외 기준 변경 및 제한 기간 축소(안 제11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인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9월 제정됨
- 그러나 기존 조례의 지급 대상 요건 및 지급 제외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 중복의 요건 등이 까다로워 많은 농어가가 공익수당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농어민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요건 관련 충청북도, 타시도 비교>

지급요건	충청북도	타 시도
주민등록	3년 이상	1년 ~ 2년 이상
경영체 등록	3년 이상	1년 ~ 2년 이상
농업외소득 제외	가구합산 3,700만 원	대상자 3,700만원

- 이에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요건의 완화를 통해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여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8조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거주 3년을 1년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을 1년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였음
- 이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9조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기존에는 시·군 관내 또는 충북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 즉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화폐의 생산 및 실물카드의 등록 등으로 인해 지급 시기가 늦춰져 수혜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지급가능하게 하여 공익수당의 빠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본 조문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11조는 공익수당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기존 농어가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익수당 지급에서 제외하였으나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기준 3,7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등 각종 법령 위반에 따른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 것은 공익수당 수혜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충북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요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어가가 공익수당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빠른 수당의 지급을 위해 지급 방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요건의 완화를 위해 지급 대상,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과 공익수당의 신속 지급을 위한 지급방법을 적절히 정비 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자

확대로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확대된 수혜자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익수당 지연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공익수당의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